
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

2. 적용대상계약

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상품

3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
가.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해당월 주보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.

나.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주보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연간 총 주보험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며, 주보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(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.

4. 기타

기타 사항은 주보험에 준함.